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6.>

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통지서

양육비 선지급 대상자	성 명		전화번호	
	생년월일			
	주 소			
지원자녀 성명				
반환 사유 (부정청구등의 종류 등)				
① 반환금액				원
② 납부한 금액				원 (※ 기준일자: 년 월 일)
③ 이번 납부 대상 금액(①-②)				원
납부기한				년 월 일까지
납부기관	양육비이행관리원			
납부방법	계좌이체 (예금주/은행/계좌번호:)			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9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을 통지하오니,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위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

안내사항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,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위 납부기한 경과 시까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2.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**30일** 이내에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3. 반환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양육비 선지급 반환금액 분할납부 신청서(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참고)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